

가. 운영 목적

1. 본 제도는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팀 및 클럽팀을 대상으로 리그 참가를 위한 기본적인 팀의 역량과 자격을 심사하고자 함
2. 초중고 축구리그의 안정적인 운영과 참가팀의 지속가능한 리그 참가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나.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신규 참가팀 라이선스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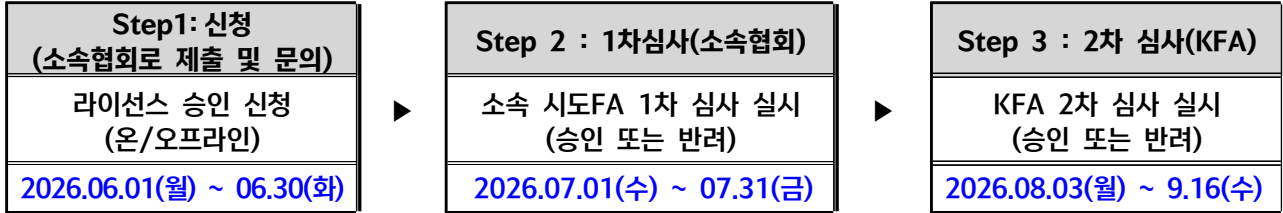
1.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신규 창단팀(U15/U18) *첨부파일 팀창단 리그 라이선스 신청 메뉴얼 참고
 - 통합경기정보시스템(www.joinkfa.com)을 통해 신청 (joinkfa)초중고 축구리그 팀창단 양식”활용
 - ↳ 경로(joinkfa) : 팀창단 -> 팀창단 신청 -> 리그라이선스 신청서관련 각종서식 다운로드
 - K리그 산하 유소년팀 : (U12, U15, U18)과 K3.K4 산하 유소년팀(U12, U15, U18)은 신규 창단 팀과 동 기간 내에 진행하되 서류제출 및 세부사항은 프로연맹 및 소속 시도협회와 협의 후 별도 안내
- ▶ 오프라인 신청 : 기존팀(전문/동호인) 및 해체팀(당해연도 해체팀)
 - 공문 및 제반 서류를 소속 시도협회에 제출 하여 신청

2. 라이선스 신청 관련 정책 사항 안내

#	구분	세부내용
1	U18 신규 참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경기 의무화를 추진하며, “각 시도협회와 권역리그 주관 시도협회“에서 협의 후 홈경기운영 최종 결정
2	U12 신청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당해연도에 참가한 리그(U10 이상), KFA 승인 전국단위 대회·페스티벌, KFA승인 지역대회 중 1개 이상의 참가 기록 제출 필수 · 리그/대회 참가 간 몰수패, 실격 및 징계사항은 심사 시 반영함 별도 참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출전 기록 혹은 참가 증명 공문 등으로 대체 가능 · 초등 하계 페스티벌 및 화랑대기, KFA승인 전국단위 지역대회 및 리그 참가팀이 해당 대회 또는 리그에서 2회 이상 경기에 불참할 경우 해당 팀은 완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가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리그/대회 참가 간 몰수패, 실격 및 징계사항은 심사 시 반영함 별도 참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출전 기록 혹은 참가 증명 공문 등으로 대체 가능함 · 신청 시 참가신청서를 제출 (joinkfa 리그/대회정보 -> 대회 참가내역 -> 참가신청서 출력 및 제출)
3	각 시도협회는 리그 운영 역량에 맞는 팀 수까지 신규팀 승인 예정 (소속협회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가능한 팀 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신청팀 간 상대평가를 통해 미승인팀 발생 할 수 있음
4	지도자 자격 기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등록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축구) 자격증 보유 필수 · 당해연도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필수 ↳ 당해연도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취득 계획서 OR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p>※자격 기준 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p>

3. 라이선스 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안)



* 1차 ~ 2차 심사 단계에서 반려 처리시, 해당 팀은 수정 및 보완 후 STEP1 단계부터 재신청
 **‘오프라인 신청팀’은 동 기간 내 심사 완료 후 ‘최종 승인팀의 행정처리’는 하반기 별도 기간 내 진행

라. 신규팀 라이선스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분	세부내용														
1	팀의 형태 및 적용범위	▶ 참가신청 완료 후 어떠한 사유라도 해당 법인 해산 시, 해당 법인으로 참가하는 (모든) 팀은 참가자격을 상실함 ▶ 신청하는 클럽명이 법인명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클럽명이 명기되고, 법인이 해당 클럽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만 승인 가능														
2	리그 참가신청	▶ U12_10명 이상, U15_16명 이상, U18_18명 이상 참가신청(등록규정과 동일 적용) ▶ 지도자 및 임원의 중복 참가 제한 : 리그규정 ‘5장 7조 ④항’- 지도자는 각기 다른 두 개 팀에 지도자 또는 임원(팀부단장, 팀부장, 주무, 의무, 트레이너 등)으로 중복 참가 불가														
3	동일법인의 참가신청	▶ 동일 법인 소속으로 U18 1팀, U15 1팀, U12 최대 2팀(분할팀)운영 및 리그 참가가 가능함(초등부 분할팀은 1팀으로 간주) ▶ U12의 경우에 한하여 1개 등록팀이 2팀으로 분리하여 초등리그 참가 가능 1개의 권역만 있는 지역의 초등부 분할팀(2개팀)의 경우, 협회 판단에 의해 동일 권역 편성이 가능하다. ※ 참가팀의 공정한 기회부여 및 권역리그 운영 상의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 시도협회의 판단에 따라 초등리그 분할팀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법인정관 또는 운영관련 규정에 해당 연령대 팀 운영에 대한 사항(법인 보유 급별 팀 현황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홈경기장 및 훈련장 확보	▶ 제출 가능 서류(아래 항목 중 1개 제출) - 리그 참가년도 기준 운동장 사용계약서(1년 이상) - 관리(소유) 단체 발급 시설사용 확인서 - 사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공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훈련장 규격</th> <th style="width: 20%;">사용횟수</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12</td> <td>최소 풋살경기장 정식 규격 (38m X 20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회이상</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실내구장 가능하나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만 가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15</td> <td>최소 90m X 45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회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18</td> <td>권장 105m X 68m 이상 (최소 100m X 64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회이상</td> </tr> </tbody> </table> ※ 상기 서류는 반드시 구장 소유 또는 관리 단체가 발급한 문서에 한하며, 팀 자체 작성 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주소지, 시설 규격, 사용 기간(요일 및 시간 포함), 사용 횟수가 명시되어야 함 ▶ 운동장사용계약서에 명시된 운동장의 주소지와 사업 자등록증에 명시된 주소는 반드시 같은 광역단체에 속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심사에 따라 1시간 이내의 지역 훈련장에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수도권외 운동장 사용 포화 상태 및 월단위 대관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시도협회가 특별 승인을 요청하는 팀에 한해서 대한축구협회검토 후 연간 훈련장 사용 계약서/확인서 없이 한시적으로 특별승인 할 수 있다.	구분	훈련장 규격	사용횟수	비고	U12	최소 풋살경기장 정식 규격 (38m X 20m) 이상	2회이상	실내구장 가능하나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만 가능	U15	최소 90m X 45m 이상	3회이상	U18	권장 105m X 68m 이상 (최소 100m X 64m 이상)	3회이상
구분	훈련장 규격	사용횟수	비고													
U12	최소 풋살경기장 정식 규격 (38m X 20m) 이상	2회이상	실내구장 가능하나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만 가능													
U15	최소 90m X 45m 이상	3회이상														
U18	권장 105m X 68m 이상 (최소 100m X 64m 이상)	3회이상														
5	기타사항	▶ 리그 라이선스 취득 후 팀의 사정에 따라 리그 불참시(참가년도) 해당 라이선스는 무효되며 해당 팀은 시도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전년도 리그에 실격 등 결격 사유 없이 일정을 마친 경우에 차년도 리그 라이선스는 자동 유지된다														

다. 라이선스 승인 이후 리그 참가 절차 소개

1. 리그 라이선스 취득 후, 발급된 ID로 팀명 참가신청 및 리그 참가비 납부(기간 별도 안내)
 - 초중고 축구리그 참가비 : 초등 10만원(분할팀의 경우 팀당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2. 정기 등록기간 내 팀 등록 및 선수 등록 절차 진행
3. 기타 팀 정보(임원, 유니폼 색상, 배번 등) 입력 및 참가신청 관련 절차 수행

마. 신규 리그 라이선스 신청 서류 안내

1) 스포츠기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팀 운영에 기본이 되는 선수 보유(등록) 및 선수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준”

세부 카테고리	세부 내용	비고								
선수 보유 (등록/참가신청)	▶ 초등 10명, 중등 16명, 고등 18명 이상의 선수 보유 (등록 및 참가신청) : 선수단 구성 및 선수 선발 계획 제출	- 선수단 구성/선발계획 (제출서류 #3)								
지도자 구성	▶ 각 급별 기준에 맞는 자격 보유 지도자 최소 1인	- 팀 소속 지도자 관계 자증명서 (제출서류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필수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초등부</td> <td>AFC C급 이상(최소자격)</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스포츠지도사 2급(축구)</td> </tr> <tr> <td>중등부</td> <td>AFC B급 이상(최소자격)</td> </tr> <tr> <td>고등부</td> <td>AFC B급 이상(최소자격)</td> </tr> </tbody> </table> <p>·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등록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축구) 자격증 보유 필수</p> <p>· 당해연도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필수 ↳ 당해연도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취득 계획서 OR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p> <p>※자격 기준 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p>		구분	필수 자격증		초등부	AFC C급 이상(최소자격)	스포츠지도사 2급(축구)	중등부	AFC B급 이상(최소자격)
구분	필수 자격증									
초등부	AFC C급 이상(최소자격)	스포츠지도사 2급(축구)								
중등부	AFC B급 이상(최소자격)									
고등부	AFC B급 이상(최소자격)									
선수 육성 프로그램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선수 육성 계획’ 제출 가. 클럽 운영의 목적과 철학 나. 팀 관리자 운영 계획(지도자, 피지컬, 분석, 의료 담당자 등) 다. 축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선수육성(훈련/교육) 지원 계획서 (제출서류 #7)								
선수지원 프로그램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선수 지원 계획’ 제출 가. 선수 대상(학과중심) 교육/지원프로그램 나. 선수 대상 장학제도 등 지원 제도 다.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부상자 관리 등)	선수 지원 계획서 (제출서류 #7)								

2) 시설기준

“선수들의 훈련 및 홈경기 운영을 위한 경기장 및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

세부 카테고리	세부 내용	비고
훈련장 기준	▶ 상시 기용 가능한 훈련장 을 1개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유 가. 리그 참가연도 사용계약서 또는 확인서 나. 시설현황자료(사진 자료 포함) 다.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 경기장 원칙 (협회에서 인증한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 권장)	훈련장 계약서(확인서) 훈련장 시설 현황 자료 (제출서류 #5-1)
홈경기장 기준	▶ 홈경기 진행을 위한 ‘ 홈경기장 시설 현황자료(사진 자료 포함) ’ 제출 ▶ 홈경기 개최를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홈경기장을 보유 또는 사용권한을 보유해야함 가. 홈경기 일정에 따른 홈경기장 활용 권리 보유(사용계약서 또는 확인서) 나. 경기장 규격 105m X 68m 이상 관장(최소 100m X 64m 까지 허용) 다. 협회에서 승인한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 경기장 관장 라. 홈경기 진행을 위한 팀대기실(2실), 심판대기실(1실) 보유(간이 시설/천막 대체 가능) 마. 야간 경기 개최를 위해서는 600LUX 이상의 조명시설 보유	홈경기장 계약서(확인서) 홈경기장 시설현황자료 (제출서류#5-2)
숙소 운영	▶ 클럽하우스(합숙소) 운영 시 현황자료 제출 : 위치 및 시설현황, 안전계획 등	숙소 현황 자료 (제출서류 #7)

3) 인사 및 행정기준

“팀운영과 홈경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적구성에 대한 기준”

세부 카테고리	세부 내용	비고
팀 행정 지원 조직 구성	▶ 팀행정(팀매니저) : 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할 총괄 책임자 1인 ▶ 경기운영 : 홈경기 운영 및 진행에 대한 책임자 1인	팀 행정 조직 및 홈경기 운영 계획 (제출서류 #6)
홈경기 운영 조직 구성	▶ 경기운영(필수) : 홈경기 운영과 진행에 필요한 인력 (볼스태프, 들것조 등) ▶ 안전(필수) : 홈경기 선수단 및 심판진 등의 안전 담당자 ▶ 홍보(선택) : 경기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	홈경기 조직 운영계획자료 (제출서류 #6)

4) 법적 기준

“리그 참가를 위한 독립 법인 형태의 클럽운영과 관련한 기준

세부 카테고리	세부 내용	비고
법인사업자 등록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제출(학교법인 제외) 가. 학교팀 : 학교 법인 나. 클럽팀 :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 ▶ 법인 성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스포츠(체육) 또는 축구와 무관한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된 법인은 승인 불가 가. 법인 번호(xxx-'00'-xxxxxx) 두 번째 자리 '00'의 번호는 '81~88'인 경우에만 적합한 법인 으로 인정 ▶ 팀은 법인등록 소재지의 시도축구협회에 리그참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 (제출서류 #9)
법인 정관	▶ 해당 법인의 정관 사본 제출	법인정관(클럽팀에 한함)